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32호		
의 안 명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발의연월일**	2022. 4. 5.
위 원 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 경 석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최근 타 자치구 기금 횡령 사건 관련하여 기금 지출절차를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도록 함.

나. 장부비치 조항 삭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1)]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2)]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2.21.~2.28.(「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1)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Ⅱ. 검토 의견

1. 조례 개정의 배경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3]와 제29조(규칙)[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사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3.1일 기준으로 현재 서초구의 자치법규는 총 440개로서 327개의 조례와 113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표1> 서초구 자치법규 현황

계	자치법규	
	조례	규칙
440	327	113

○ 한편, 2012년 여수시청 공무원 80억 횡령, 2021년 횡성군청 공무원 4억여원 횡령 등 공금 횡령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기금 115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관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3)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4)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초구 기금의 지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총 14개 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임.

<표2> 일괄 정비 대상 조례 목록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개 정 내 용	
			회계공무원	장부비치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과	제11조(회계공무원) 개정	제11조제2항 삭제
2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화관광과	제13조(회계공무원) 개정	제13조제2항 삭제
3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체육과	제8조(기금회계관) 개정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및 별지 서식 유지
4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경제과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관련 조항 없음
5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행복과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 개정	제12조제3항 삭제
6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성보육과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개정	관련 조항 없음
7	양성평등기본조례	여성보육과	제46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제46조제2항 삭제
8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조례	청소행정과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개정	관련 조항 없음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청소행정과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개정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및 별지 서식 유지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개 정 내 용	
			회계공무원	장부비치
10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계획과	제10조(회계공무원) 개정	제10조제2항 삭제
11	재난관리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	안전도시과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관련 조항 없음
12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로 과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제13조제2항, 제15조(장부의 비치) 및 별지 서식 유지
13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도시인프라 조 성 과	제15조(회계공무원) 개정	제15조 제3항 삭제
14	식품진흥기금조례	위 생 과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관련 조항 없음

2. 조례 개정의 형식

○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주요 쟁점 해설집」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

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도 6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시행하였음.

<표3> 서초구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례

연번	발의일	조례명	발의자	처리결과
1	2008.10.31.	서초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청장	원안가결
2	2015.12.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구청장	원안가결
3	2016.11.17.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청장	원안가결
4	2019.4.30.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구청장	원안가결
5	2020.4.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구청장	원안가결
6	2021.6.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구청장	원안가결

3. 주요 내용 검토

○ 각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는 서초구 재무관으로 지급명령은 서초구 지출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 관리 장부(대장)의 비치 조문을 삭제함(안 제1조～제14조).

○ 이는 우리구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공무원' 조항을 보완하여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 각각 서초구 재무관,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체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행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장부의 비치 및 증빙서류의 관리 의무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5]과 중복되는 규정으로서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금의 지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4개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